

수원지방법원 2023. 5. 25 선고 2022나789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

담당변호사 최재호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이용세

변 론 종 결 2023. 4. 6.

판 결 선 고 2023. 5. 25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6. 23. 선고 2020가단1327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9. 11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5. 9. 11. 접수 제34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.

가.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2022. 6. 23.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.

나. 피고는 2022. 9. 21. 수원지방법원 2022카담100890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2. 11. 1.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,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20,475,246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,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2022. 11. 7. 원고에게 송달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담보제공 결정’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하여 2022. 11. 14. 대법원 2022마7225호로 재항고하였는데, 2023. 2. 28.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, 위 항고기각 결정이 2023. 3. 7.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위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위 확정일 이후로서 위 담보제공기간을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.1) 2. 따라서,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태, 판사 이은희, 판사 이국현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하남시 I 목장용지 995㎡
2. 하남시 J 도로 7㎡
3. 하남시 K 목장용지 32㎡
4. 하남시 I, K 지상

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동물관련시설

1층 392.40㎡ 축사(계사)

1층 105.00㎡ 계분발효장. 끝.

1) 한편,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3카담95호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의 담보금액을 11,000,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금원을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23. 4. 21.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.